

1998. 5.

제76회 임시회

**'98 제1회 추가경정 도시국 예산안
검 토 보 고 서**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(전문위원 박 홍 표)

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국 세입·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

본 예산안은 1998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동년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□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·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총 액	78,347,276	71,656,626	6,690,650
일반회계	67,623,257	61,476,404	6,146,853
특별회계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총 액	45,722,894	41,341,871	4,381,023
일반회계	34,998,875	31,161,649	3,837,226
특별회계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

○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총 액	34,998,875	31,161,649	3,837,226
사회산업국소관	25,945,143	23,685,058	2,260,085
도시국소관	9,053,732	7,476,591	1,577,141

○ 도시국 부서별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지역교통과	267,659	269,382	△ 1,723
건설과	8,551,196	6,939,854	1,611,342
건축과	43,737	52,715	△ 8,978
지적과	191,140	214,640	△ 23,500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

○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	'98제1회추경예산안	당초예산액	증 감
총액	10,724,019	10,180,222	543,797
사회산업국소관(의+폐)	8,519,238	8,117,675	401,536
도시국소관(주+공)	2,204,781	2,062,547	142,234

○ 도시국 부서별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	'98 제1회 추경예산(안)	당초예산액	증 감
주차장특별회계	2,204,510	2,062,547	141,963
공동주택건설 특별회계	271	0	271

□ 검토의견(전문위원 박 홍 표)

- '98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가지 축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,
 ①경상적경비 등의 획일적 예산절감 ②신규사업의 타당성 ③
 국·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및 당초예산액의
 변경이 그것입니다.

1. 경상적 경비 등의 확일적 예산절감에 대하여

○ 일반적 예산절감의 원칙 :

i)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(비효율적인 부분의 예산을 삭감, 장기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는 부족액 보충)

ii) 현실적 실효성

○ 확일적 예산절감의 장점 : 현실적 실효성의 충족

① 짧은 시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

② 예산 절감의 의지를 인식시킬 수 있다

○ 단점 :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역행할 수 있다

① 각 부서별, 사업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. 따라서 당초예산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는 전제하에서, 예산절감만을 목표로 한다면 정말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이나 자산취득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배제하지 못할 것

- 건설과 사항설명서

가. 155쪽, 건설행정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

· 기정 6,670천원, 2,001천원(30%) 삭감, 4,669천원

· 기정의 내용 : 기계톱 270,000원×1대 = 270천원, 발전기 구입(1대) 2,800천원, 햄머드릴(1대) 600천원, 도로소파보수용 소형로라 3,000,000원×1대 = 3,000천원

→ 2,001천원을 어떻게 삭감할 수 있겠는가? 4항목에서 고루 삭감을 하다가는 한 가지도 구입을 할 수 없을 것임. 결국 발전기 1대나 도로보수용 소형로라 1대를 구입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.

나. 155쪽, 재해대책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

· 기정 2,200천원, 660천원(약 30%) 삭감, 1,540천원

· 기정의 내용 : 재해대책용 양수기 $400,000\text{원} \times 4\text{대} = 1,600\text{천원}$,
재해대책용 핸드브레카 $600,000\text{원} \times 1\text{대} = 600\text{천원}$

→ 위와 마찬가지로 두 항목에서 고루 삭감한다면 한 가지도 구입할 수 없음. 둘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임.

다. 160쪽, 건축주택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

· 기정 3,500천원, 500천원(약 14%) 삭감, 3,852천원

· 기정의 내용 : 복사기 구입 $3,500,000\text{원} \times 1\text{대} = 3,500\text{천원}$

→ 500천원을 삭감하고도 복사기 1대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당초예산 과다책정일 것임

- 지적과 사항설명서161쪽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

· 기정 9,391천원, 1,878천원 삭감, 7,513천원 책정

· 기정의 내용 : 개별지가 통보 $170\text{원} \times 37,000\text{건} \times 1\text{회} = 6,290\text{천원}$,
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통보 $1,170\text{원} \times 700\text{건} \times 2\text{회} = 1,638\text{천원}$,
개발부담금 통보 $1,170\text{원} \times 200\text{건} \times 2\text{회} = 468\text{천원}$, 토지이동정리
및 토지표지변경 동기촉탁 통보 $1,170\text{원} \times 500\text{건} \times 585\text{천원}$, 공유토지
분할 동기우송료 $1,170\text{원} \times 350\text{건} = 410\text{천원}$

→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지니고 있고 각 항목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만큼의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, 1,878천원의 삭감을 위해서는 각 항목에서 골고루

감액이 되어야 할 것임. 그러나 이는 각 항목 모두 불완전한 시행을 낳게 될 것이 명백함

② 예산절감의 형식성, 불합리성

- 지역교통과 사항설명서 152쪽, 교통 및 운수지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
 - 기정 210천원, 70천원(약 33.3%)삭감, 140천원 책정
 - 기정의 내용 : 캐비넷 70,000원×3개 - 210천원
- 약 33.3%의 삭감액 70천원은 캐비넷 1개에 해당되므로 경정 예산으로 캐비넷 2개 구입이 가능(예산삭감을 취득자산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).

만일 행정자치부의 '98 예산비목별 절감권고에만 충실하여 **비용의 30%**(63천원)를 삭감하였다면, 캐비넷을 2개 구입하고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(이러한 예가 다른 부서의 경우 있음).

③ 부서간 형평성의 문제

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부서는 부풀린 예산편성을 한 부서에 비해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

④ 잘못된 관행의 성립가능성

이러한 경직적·확일적인 예산절감은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각 부서마다 과다책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

⑤ 명목상으로만 절감, 실제로는 상사업비 등으로 보충

자산취득 등의 항목을 일정비율 절감하는듯 하면서 상사업비로써 그 삭감부분을 보충하는 사례가 다른 부서 예산편성에 있음

- 대안 : 각 부서별 총액의 일정비율을 삭감토록 하되, 사업이나 용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, 삭감하도록 하는 것(최상의 방법은 각 부서별로 합리적인 판단하에 자발적인 삭감이겠으나,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율만은 강제)

2.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

- '98 제1회 추경 도시국 예산안 신규사업(10여종)은 큰 논란이 될만한 것은 없고 대부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임
- 다만,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198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정한 연계를 지닌 신규사업이 되어야 할 것

(예) 지역교통과 사항설명서 151쪽, 교통 및 운수지도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은 198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, 제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됨

- 지적과 사항설명서 161쪽, 지적관리 자체사업 지적전산용품 구입에서 모뎀 (1대), 패드 (1대), 부정전전압기 (1대) 각각의 필요성 및 그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

3. 국·시비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및 예산 변경

- 국·시비보조가 확정 내시되면 그에 따라 구비가 일정비율 책정되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당초예산액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'98 제1회 추경 도시국 예산안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유덕동 덕흥마을~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포장사업에 시비 1,000,000천원 증액이 유일한 것입니다.
- 이상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'98 제1회 추가경정 도시국 세입·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, 행정자치부의 '98 예산비목별 절감권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 관서운영비, 경상적경비만을 일률적·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, 이론 바 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을 발견할 수 없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. 즉, 중앙정부의 권고는 말 그대로 '권고'일 뿐 우리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·집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나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른 평가 등에 크게 연연해 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이 검토보고가 예산심의, 나아가서는 구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